##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00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 강경숙・황운하・김한규

조 국・김준형・이해민

이재정 · 김선민 · 백승아

박은정 · 김재원 · 서왕진

신장식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 하여야 함.

그런데,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 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5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4항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	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
리 지침 등) ① ~ ④ (생 략)	리 지침 등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⑤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
	취한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고
	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
	것이 아니면 제4항에 따른 교
	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
	급상황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
	을 지지 아니한다.